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| 변경 전   | 변경 후  |
|--|---|
| 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· ②(생 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<br/>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<br/>각 호와 같다.</p> <p>1.~8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④ (생 략)</p>   | 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·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<br/>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<br/>각 호와 같다.</p> <p>1.~8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. Cp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<br/>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<br/>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<br/>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<br/>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0. Cp-E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<br/>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<br/>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<br/>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<br/>투자자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<br/>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<br/>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<br/>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<br/>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<br/>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<br/>하여야 한다.</p> <p>1.~8.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~⑤(생 략)</p> | 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<br/>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<br/>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<br/>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<br/>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<br/>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<br/>하여야 한다.</p> <p>1.~8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. Cp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10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  |
| 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 · ②(생 략)</p>  | 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 · ②(현행과 같음)</p>  |

|   |  |
|---|--|
|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8.(생략)<br/>         &lt;신설&gt;</p> |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8.(현행과 같음)</p> <p><b>9. Cp클래스 수익증권</b>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7<br/>        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5<br/>        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br/>       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 <p><b>10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b>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7<br/>        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0<br/>        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br/>       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 |
| <p>&lt;신설&gt;</p>   | <p><b>부 칙</b></p> 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p>  |